

성능위주소방설계의 법적문제 및 개선방안 The Legal Problems and Improvement in the Performance Based Design of Fire-fighting

이종영[†] · 백옥선*

Jong-Yeong Yi[†] · Ok-Sun Baek*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중앙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수료
(2009. 11. 23. 접수/2010. 2. 12. 채택)

요 약

2009년 1월 1일부터 개정 「소방시설공사업법」의 시행에 따라 일정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반드시 성능 위주소방설계를 하여야 한다. 성능위주소방설계는 구조·면적·용도·수용인원 등 건축물의 특성을 반영하여 가장 효율적으로 소방안전을 달성하고자 하는 설계이다. 성능위주소방설계는 일반적인 소방대상물에 비해 규모나 구조에서 특성이 있는 건축물로서 “국가화재안전기준”으로 대표되는 사양위주소방설계로 화재안전을 담보할 수 없거나 획일적인 소방설계를 하는 것이 부적합한 건축물 등에 있어 의미가 있다. 그러나 소방관련 법령에서는 성능위주소방설계의 의무대상물과 설계지역만을 규정하고 있고, 성능위주소방설계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그 밖의 구체적인 사항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제 시행상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성능위주소방설계와 관련하여 현행법령을 분석함으로써 성능위주소방설계제도의 바람직한 시행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ABSTRACT

The buildings relevant to the law should be designed performance-based necessarily according to “Fire-Fighting System Installation Business Act” amended, January 1, 2009. Performance based design means that building design reflects structure, size, purpose, and building capacity to achieve the most effective design of fire-fighting system. Performance based design has meaning to buildings that it is insufficient to control fire-fighting by previous law-oriented design or inappropriate by uniform design, because of buildings becoming bigger and higher. However, it is difficult to implement the system actually, because laws relevant to fire-fighting prescribe only the object and the required qualifications of performance based design, but they don't have rules to enforce performance based design for specific parts. This study suggests improvements for a desirable implementation of performance based design in legal aspects, by analyzing the current legal regulations related to performance based design.

Key words : Performance based fire-fighting design system (PBD), Fire-Fighting System Installation Business Act, Building Act, The agreement system on the building permission

1. 서 론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해 종전에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의한 국가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연면적과 사양중심의 정형화되고 획일적인 설계기준을 따르고 있었다. 이러한 법규 위주의 소방시설설치에 대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소방

대상물에 적합한 화재안전설계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측면이 지적되면서, 특수한 시설을 가지고 있거나 초고층화·지하화·복합화된 소방대상물에 대하여 법규 위주의 소방시설설치가 아니라 당해 소방대상물의 용

※ 이 논문은 2007년 소방방재청 차세대핵심소방안전기술개발사업인 “PBD 표준절차서 및 설계기준 연구 개발-국내 PBD 법·제도 기준개발”의 연구결과를 수정·보완한 것임.

1)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고시되는 기준을 말한다.

[†]E-mail: jyyi@cau.ac.kr

도·구조·수용인원·가연물의 양 등을 고려하여 소방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성능위주소방설계가 요구되었다.

성능위주소방설계란 현대 방화공학의 발전에 따라 소방대상물의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소방시설설계로서 소방안전을 최적으로 실현하는 소방시설설계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성능위주소방설계는 소방대상물의 특성을 고려한 설계로서 해당 소방대상물의 특성에 적합하게 소방안전을 실현하면서 불필요한 소방설비를 배제하고, 발전된 새로운 소방기술의 적용을 통하여 효율적인 소방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기여²⁾하는 설계라고 할 수 있다.

성능위주소방설계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규정하였으며, 경과기간을 거쳐 2009년 1월 1일부터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제도로 정착하였다. 그 결과 법령에서 정하는 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반드시 성능위주소방설계를 해야만 한다. 그러나 성능위주소방설계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소방관련 법령은 제도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지 않아서 시행상의 어려움이 있으며, 실제로 관련규정의 정비시까지 소방방제청 자체운영지침으로 법의 적용을 잠정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부적법한 상태에 있다.

성능위주소방설계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현실적인 문제의 해결과 더불어 제도의 시행을 위한 법적인 준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므로 이 논문에서는 성능위주소방설계제도의 정착을 위한 법제도적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하에서는 성능위주소방설계의 법적근거와 규정내용을 검토하고, 여기에서 도출된 법적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2. 현행법상 성능위주소방설계 근거

2.1 성능위주소방설계제도 시행의 법적 근거

성능위주소방설계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1조제2항이 2005년 8월 4일 공포되면서 법률상 제도로 정착되었다. 이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위치·구조·수용인원·가연물의 종류 및 양 등을 고려하여 설계(이하 “성능위주소방설계”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성능위주소방설계에 관한 내용은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성능위주소방설계의 대상물의 범위, 성능위주소방설계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술인력 및 자격에 따른 설계의 범위 등은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으며, 기타 성능위주소방설계의 방법 등은 소방방제청장의 고시로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법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2005년 8월 「소방시설공사업법」의 개정·공포시 개정법률의 시행일을 1년 후로 규정하였으나, 법률의 시행일까지 성능위주소방설계의 대상이 되는 특정소방대상물과 성능위주소방설계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술인력 및 자격에 따른 설계의 범위 등 성능위주소방설계제도의 도입에 필요한 전제 사항이 하위법령에서 정해지지 못하였다. 2007년 1월 24일에 비로소 동법 시행령에 제2조의2(성능위주소방설계를 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와 제2조의3(성능위주소방설계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등)의 규정을 두면서 2009년 1월 1일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성능위주소방설계를 적용하도록 부칙에서 규정함으로써 200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하고 있다.

2.2 성능위주소방설계의 대상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는 반드시 성능위주소방설계를 하여야 하는 성능위주소방설계대상 건축물을 정하고 있어서, 신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이 동법 시행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해당 소방대상물의 용도·위치·구조·수용인원·가연물의 종류 및 양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는 성능위주소방설계를 하여야 한다.

성능위주소방설계의 대상이 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특별히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연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건축물의 높이가 10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³⁾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4호 마목 및 마목의 철도역사(정비창 등 관련시설 포함)·공항시설(항공관제탑 포함), 하나의 건축물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이 10개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⁴⁾이다.

3) 연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과 건축물의 높이가 10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에 따라 공동주택 중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아파트는 포함되지 않는다.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라 “영화상영관”은 영리를 목적으로 영화를 상영하는 장소 또는 시설을 말하며, 연간 영화상영일수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수의 범위 이내인 장소 또는 시설은 제외된다.

2) 행정안전위원회,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2005.6, 6면.

위와 같이 의무적으로 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모든 건축행위에 대해서가 아니라 신축의 경우에만 성능위주설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소방관련 법령상 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에 있어서 건축물의 신축·개축·재축·이전 및 대수선 중인 대상물까지 포함하여 규제하는 반면에 성능위주설계 대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은 제도의 실행에 따른 형평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소방대상물인 건축물의 재축이나 대수선은 실질적으로 신축과 동일하게 해당 건축물의 설비와 시설을 완전하게 다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축뿐만 아니라, 재축과 대수선의 경우에도 성능위주설계를 적용하는 것이 적합한 입법정책이었다.

2.3 성능위주설계자격 및 절차

성능위주설계는 소방대상물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사양위주설계를 대체하는 소방설계이기 때문에 소방대상물의 특성에 적합한 소방설계를 할 수 있는 성능위주설계를 하는 자의 능력이 핵심적인 사항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성능위주설계를 도입함에 있어 자격자에 관한 사항은 필요적 사항에 속한다. 「소방시설공사업법」과 동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른 성능위주설계자의 자격은 동법상의 전문소방시설설계업을 등록한 자 또는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등록기준에 따른 기술인력을 갖춘 자로서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기관이나 단체로 정하고 있다.

성능위주설계는 사양위주설계에 따른 소방시설로는 화재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운 소방대상물의 화재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로서 설계의 전문성이 중요하게 작용하여 사양위주설계에 비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이 구축될 것이 요구된다. 그러나 법령에서는 성능위주설계의 대상물, 설계자, 설계방법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성능위주설계제도 시스템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성능위주설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도 성능위주설계에 대한 검증절차, 기술인력의 관리, 교육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등에 대한 제도가 필요하며, 성능위주설계의 경우 사양위주설계에 비해 건축설계와의 관련성이 더욱 크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소방설계와 건축설계간의 유기적 절차와 관련해서도 「건축법」과의 관계에서 검토가 필요하다.

한국화재소방학회 논문지, 제24권 제1호, 2010년

3. 성능위주설계제도의 법적 개선방안

3.1 성능위주설계 관련 소방관계법령의 체계 정비

3.1.1 성능위주설계와 사양위주설계의 법적근거의 동일성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설계를 사양위주설계라고 하고 있다.⁵⁾ 이러한 사양위주설계에 대한 예외로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1조제2항은 성능위주설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령의 문언을 살펴보면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관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서 소방시설설치의 현상적 의무에 관해 규율하고 있는데 반해,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는 현상적 의무의 전제가 되는 소방시설설계의 유형으로서 성능위주설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어 소방시설의 설치와 설계를 서로 다른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 그러나 소방시설의 설치설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은 곧 설계기준이 되는 것이고,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1조의 소방설계 중 성능위주설계와 인정된 특수공법설계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통합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법률의 체계에 적합한 입법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 원칙과 예외는 동일한 법률에서 규정하여야 법률의 적용을 받는 수범자가 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한 설치의무를 적합하게 이행할 수 있다.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기준을 일부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다른 일부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규정함으로써 소방시설기준과 설계기준을 다른 것으로 혼동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입법론적인 오류라고 할 수 있다.⁶⁾

5) 「성능위주설계에 대응하는 소방시설의 설계로 법규위주설계 또는 사양위주설계라는 용어를 학술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용어의 통일적 사용을 위하여 법규위주설계와 사양위주설계의 개념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용어적으로 법규위주설계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계를 의미하고, 사양위주설계는 소방설계를 법규에서 명령된 바와 같이 설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로서 성능위주설계는 법규위주설계와 대립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성능위주설계도 법규에서 허용되거나 명령되는 법규위주설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거나 요구되는 소방설계인 법규위주설계는 성능위주설계와 사양위주설계를 포함하고, 법규위주설계가 곧 바로 사양위주설계라고 할 수는 없다.

6) 국회법제실, 입법이론과 법제실무, 2005, 25면 이하.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소방시설설치와 관련된 모든 규제사항,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물 및 안전관리기준, 소방시설기준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성능위주설계는 소방시설의 설계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소방시설기준의 특례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성능위주설계의 대상, 검증 및 허가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여야 법률의 체계에 적합하다.

소방시설설계에 대해 현행법체계와 같이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공사업법」으로 분리하여 규정하는 경우 법률의 수범자가 근거법규를 명확하게 알기 어렵고, 양법률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워 혼동을 할 우려가 있으므로 정비의 필요성이 있다.

성능위주설계의 자격에 관한 사항은 소방설계의 사업자에 관한 규제에 해당한다. 현행 법체계는 소방시설을 설치할 소방대상물, 해당 소방대상물의 설계기준, 안전관리를 위한 유지와 관리 의무에 관하여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소방시설공사와 관련하여 소방시설공사의 설계, 시공이라는 사업에 관하여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관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성능위주설계를 할 수 있는 설계자의 자격에 관하여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정하는 것이 적합하다.

3.1.2 성능위주설계의 규정사항별 근거법률의 적합성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공사업법」의 관계는 기본법과 부속법의 관계가 아닐 뿐만 아니라, 특별법과 일반법의 관계도 아니다. 양 법률은 「소방기본법」을 중심으로 소방과 관련된 분야별 관할을 각각 규정하는 법률이다.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소방시설설치유지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이고, 「소방시설공사업법」은 사업규제법으로서 소방시설을 생활영위의 수단으로 하는 사업을 규율하는 법률이다.

소방설계 그 자체는 당연히 소방시설설치의 일부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적합하고, 소방시설설치와 관련된 사업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소방설계업의 인허가와 관련된 사항과 소방시설공사와 관련된 사업자의 의무와 관련된 사항은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적합하다. 그러므로 소방시설의 설치를 위한 소방설계의 기준으로 성능위주설계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성능위주설계를 할 수 있는 사업자에 관한 사

항은 사업을 규율하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법률체계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1조는 소방시설설계업자의 자격, 자격에 따른 설계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야 하고, 성능위주설계를 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에 관한 사항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여야 한다.

3.2 성능위주설계 대상물의 정비

3.2.1 성능위주설계와 사양위주설계의 관계정립

「소방시설공사업법」은 성능위주설계 대상을 소방대상물의 종류와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사양위주설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의무적으로 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것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성능위주설계를 도입하고 있는 외국의 법령은 소방시설설치의무자가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임의적으로 사양위주설계 또는 성능위주설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성능위주설계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외국은 소방대상물에 따라서 사양위주설계를 하거나 성능위주설계를 선택할 수 있고, 의무적으로 하나의 설계방식만을 하여야 하는 입법례가 아니다.⁷⁾ 성능위주설계를 현행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도입하기 위한 입법적 논의에서 기존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사양위주설계와의 관계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당시에 현실적으로 곧바로 성능위주설계 대상으로 규정된 모든 건축물에 대해 성능위주설계를 의무적으로 요구하게 되면, 화재안전을 확장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도입하는 성능위주설계가 오히려 화재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현실적으로 성능위주설계를 실시할 수 있는 제반 환경적 요인이 구축되지 않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소

Table 1. Fire-fighting Design System of Law

	종전법령	현행법령
화재안전 기준 적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특정소방대상물	좌동 (다만, 성능위주설계 대상물 제외)
성능위주 설계 적용	적용규정 없음	「소방시설공사업법」상 성능위주설계 대상 소방대상물

7) 차종호, 성능위주 소방 설계의 국내법규와의 연관성 연구, 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2, 64-65면.

방시설공사업법」에서 이를 도입함으로써 다양한 문제점이 대두하고 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하는 소방대상물의 범위가 비교적 넓은데 반해 성능위주설계를 적합하게 할 수 있는 소방설계의 자격자와 설계된 성능위주설계에 대한 적합성을 검증할 수 있는 절차가 정착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성능위주설계는 실행을 위한 우리 사회의 현실을 고려하여 소방시설물의 설치의무자가 사양위주설계와 선택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는 것이 적합하다. 입법론적으로 성능위주설계를 규정하는 관련된 법률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위치·구조·수용인원·가연물의 종류 및 양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를 ‘...설계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것이 적합하다.

3.2.2 성능위주설계 대상의 범위설정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1조제2항은 성능위주설계의 대상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의2는 성능위주설계의 대상을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성능위주설계제도를 도입하는 제도의 취지는 사양위주설계의 법령상 근거인 화재안전기준이 다양한 유형의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국가화재안전기준을 정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고, 소방기술의 발전에 따라 국가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소방설계를 하지 않더라도 오히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화재안전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성능위주설계의 대상을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성능위주설계가 필요하거나 성능위주설계를 하는 경우 화재안전이 효과적으로 담보된다 하더라도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사양위주설계를 하여야 하고, 성능위주설계를 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대한 소방시설의 경우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원자력법」에 따른 방사성유출을 방지하는 데에 중대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고, 원자로 및 관계시설이라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시설구조에 적합한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못하게 된다거나 이중적인 시설설치가 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현행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일부는 성능위주설계의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공방시설이나 철도역사 등과 유사한 내부구조를 가지고 있어, 국가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천장이나 벽에 스프링클러의 설치를 하더라도 화재진압에 적합하지 않으며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면 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대한 소방시설의 설계는 성능위주설계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성능위주설계의 대상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의2의 성능위주설계의 대상은 다양한 소방대상물을 충분히 반영하여 확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려된다. 원자력발전소의 경우 「원자력법」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대한 안전기준에 화재안전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원자력발전소 중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설계에 대하여는 실질적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도입하고 있는 성능위주설계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가 허가를 하게 된다. 그 결과 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대한 소방설계는 「원자력법」에 따른 성능위주설계에 추가하여 별도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양위주설계를 추가적으로 하여야 한다. 현실적으로 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성능위주설계가 되었는데 추가적으로 사양위주설계를 하게 되면 성능위주설계는 원래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 장애를 받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현행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성능위주설계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동일한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 대하여 「원자력법」과 소방관련 법률이 적용되어, 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대하여 「원자력법」은 성능위주설계를 할 것을 요구하고, 소방관계법령은 사양위주설계를 하도록 법령에서 요구함으로써 규범간의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규범간의 상충된 문제를 해결하려면,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성능위주설계의 대상에 원자력 및 관계시설을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양위주설계로 화재안전을 담보하는 데에 적합하지 않은 소방대상물을 파악하여 성능위주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비로소 성능위주설계를 도입하는 입법의 목적에 적합하게 될 것으로 사려된다.⁸⁾

3.2.3 성능위주설계를 할 수 있는 건축행위의 유형확대 성능위주설계의 대상을 명시하고 있는 「소방시설공

8)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에 의하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가운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르면 1. 화재위험도가 낮은 특정소방대상물, 2.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기가 어려운 특정소방대상물, 3. 화재안전기준을 달리 적용하여야 하는 특수한 용도 또는 구조를 가진 특정소방대상물, 4.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자체소방대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등이 그러하다.

사업 시행령」 제2조의2는 성능위주소설계의 대상을 건축물의 신축으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이전에 사양위주소설계를 했던 건축물의 개축·재축·이전 및 대수선을 하는 경우 이 건축물이 성능위주소설계의 대상이라고 하여도 성능위주소설계를 할 수 없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성능위주소설계의 대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행위만을 정함으로써 법령상 성능위주소설계를 도입하는 법정신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 성능위주소설계의 대상인 특정소방대상을 개축,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하는 경우에 현행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성능위주소설계는 허용되지 않고, 사양위주소설계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결과는 성능위주소설계를 법률에서 도입한 입법자의 의도를 시행령에서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현행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성능위주소설계를 한 소방대상물을 개축,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하는 경우에 더 이상 신축되는 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르면 신축 소방대상물이 아니면, 성능위주소설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므로 성능위주소설계의 대상인 소방대상물도 개축,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다시 하게 되면 사양위주소설계를 하여야 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⁹⁾ 법의 제정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성능위주소설계의 대상으로 해석하지 않고, 문리적으로만 이해하여 성능위주소설계로 한 신축된 소방대상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방대상물을 개축,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성능위주소설계의 대상이 되는 신축행위가 아닌 것으로 보아 성능위주소설계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 그러므로 성능위주소설계제도의 전체적인 체계 속에서 성능위주소설계를 할 수 있는 건축행위의 유형을 현행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의2와 같이 ‘신축건축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고, ‘건축물’로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성능위주소설계의 대상을 신축건축물로 제한하지 않고 건축물로 개정하게 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사양위주소설계로 건축된 소방대상물도 다시 성능위주소설계를 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부칙에서 제2조의2에 따른 성능위주소설계의 대상에 대하여 ‘시행령이 발효하기 이전에 건축된 소방대상물에는 적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해

결될 수 있다.

3.3 건축허가 동의와의 관련 절차

3.3.1 소방법과 건축법과의 관계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소방관련법은 화재를 예방·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관련사고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 나라의 법률체계는 건축물의 화재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건축법」에서 소방시설에 관한 부분을 포함한 건축물 안전일반에 관한 모든 내용을 규율하지 않고, 「건축법」과 건축에 설치되는 소방설비에 관하여는 소방관계법에서 별개로 규정하고 있어, 소방대상물인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각각의 법을 적용받아야 한다. 위와 같이 동일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과 소방관계법이 동시에 적용됨으로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하고 있는 제도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허가 동의이다.¹⁰⁾

「건축법」상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등의 동의제도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성능위주소설계의 대상인 건축물에 대한 허가의 경우에 「건축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공사업법」의 관계가 명확하게 정립되어야 한다. 현행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에 관한 절차는 사양위주소설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능위주소설계를 하여야 하는 경우 건축허가등의 동의절차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법률적 체계정립이 필요하다.

3.3.2 건축허가등의 동의

건축허가등의 동의는 「건축법」 제8조에 따른 건축허가와 연계되어 있으므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물의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 안에 설치되어야 하는 소방시설이 소방법규에 적합하게 설계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소방시설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는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 하여금 검토

9)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의하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되거나 용도변경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축 또는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등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0) 소방방재청의 특정소방대상물 성능위주소설계 운영방안에 따르면 최근 3년간('05년~'07년) 건축허가 동의현황은 162개소, 연평균 54개소에 달한다.

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건축허가등의 동의제도는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건축허가등에 있어 소방동의제도를 도입하는 이유는 화재위험이 예상되는 일정한 건축물의 건축행위에 대하여 건축물의 설계에 대한 허가에서 완공에 따른 사용승인에 이르기까지 소방법상 규정된 소방시설을 적법하게 설치하도록 하여, 소방행정의 효율성의 제고와 함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은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서 두고 있다. 이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연면적이 400제곱미터(학교시설 등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0제곱미터, 청소년시설 및 노유자시설의 경우에는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차고·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층 중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시설, 승강기 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로서 자동차 20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시설, 항공기격납고, 관망탑, 항공관제탑, 방송용 송·수신탑,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공연장의 경우에는 1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 특정소방대상물 중 위험물제조소등, 가스시설 및 지하구는 동의대상물이 된다.

예외적으로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4]에 의하여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화기구, 누전경보기, 피난기구, 방열복·공기호흡기 및 인공소생기, 유도등 또는 유도표지가 동법 제9조제1항에 의한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 그 특정소방대상물, 건축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특정소방대상물에 추가로 소방시설등이 설치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특정소방대상물이다.

3.3.3 건축허가 동의의 법적 성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건축허가등의 동의 법적 성격이 문제된다. 소방동의와 관련한 절차를 살펴보면 소방대상물 관계자가 건축허가의 관할 행정청인 시·군·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소방설계가 포함된 설계도서를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제출하면, 관할 행정청은 소방시설에 관한 설계와 관련된 서류를 관할 소방서장 또는 소방본부장에게 이송하고, 관할 소방서장 또는 소방본부장은 해당 소방대상물의 소방설계가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되었다는 의사표시를 한다. 이와 같이 소방서장 또는 소방본부장이 시·군·구청장 또는 시·도

지사가 수행하는 건축허가와 관련된 사항 중 소방설계에 대하여 행하는 행정작용이 건축허가등의 동의이다. 건축주 또는 관계인은 건축을 하기 위하여 소방서장 또는 소방본부장에게 소방동의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관할 시·군·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한다. 그러므로 소방서장 또는 소방본부장은 소방시설의 설계가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건축허가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건축허가의 신청인에 대하여가 아니라 건축허가의 관할 행정청에 대하여 건축허가의 동의를 거부하게 된다. 그러므로 건축허가등의 동의는 소방서장 또는 소방본부장의 행정행위¹¹⁾가 아니라 행정청 내부의 협의절차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는 행정내부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하고,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점에서 「행정절차법」,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처분이 아니다. 소방서장 또는 소방본부장이 행하는 건축허가등의 동의는 건축허가라는 행정처분 안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독립적인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허가신청자는 건축허가등의 동의에 대해 직접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건축허가거부를 대상으로 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¹²⁾

건축허가등의 동의에 관한 규정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은 소방서장의 허가등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무상으로 건축허가등의 필수적인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건축허가 또는 사용승인등의 행위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다. 즉, 건축허가등의의 흠결은 법이 정한 중요한 절차상의 하자가 될 수 있고, 이 경우 건축허가 또는 사용승인의 효력을 인정할 것인지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해서는 현행법에서 소방동의의 법적 성격은 행정내부적인 협의절차이므로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

11) Fr.Curtius, Entwicklungstendenzen im Genehmigungsrecht, S.65 ff.; R.Poscher, Verwaltungsakt und Verwaltungsrecht in der Vollstreckung - Zur Geschichte, Theorie und Dogmatik des Verwaltungsvollstreckungsrechts, VerwArch, Bd.89(1995), S.119 ff.

12) 판례도 이에 대해 건축허가권자가 건축불허가처분을 하면서 그 처분사유로 건축불허가 사유뿐만 아니라 구 소방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소방서장의 건축부동의 사유를 들고 있다고 하여 그 건축불허가처분 외에 별개로 건축부동의처분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건축불허가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건축불허가처분에 관한 쟁송에서 건축법상의 건축불허가 사유뿐만 아니라 소방서장의 부동의 사유에 관하여도 다룰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대판 2004.10.15, 2003두6573).

는 건축허가등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허가 또는 사용승인이 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소방시설등이 소방법상 적정·적법하다면 건축허가를 받은 허가자의 신뢰보호등의 차원에서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소방시설에 대해서는 무권한의 허가라는 점에서 무효로 볼 수도 있다.

3.3.4 성능위주설계된 건축물의 건축허가 동의의 문제
 성능위주설계는 기존의 사양위주의 설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위치·구조·수용인원·가연물의 종류 및 양 등을 고려하는 등 건축과 관련된 부분이나 새로운 소방기술과 같은 더욱 전문적인 설계가 요구된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에 관한 절차는 사양위주설계를 대상으로 하는 소방대상물을 전제로 구축된 제도이다. 사양위주설계를 배경으로 구축된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성능위주설계에 대하여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가 제기된다.

현재 소방관련법령에서는 성능위주설계대상물에 대한 건축허가등의 동의에 대해 특별히 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양위주설계 대상인 건축물허가등에 대한 동의를 규정하고 있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소방설계의 유형을 기준으로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규정하지 않고, 모든 건축물의 신축·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을 건축허가등의 동의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현행 동의절차와 다르게 특별하게 구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고, 이와 같은 경우 그 근거는 소방동의에 관한 일반규정을 두고 있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해야 할 것이다. ‘소방시설공사 성능위주 설계지침’ 제3조는 성능위주설계와 소방동의의 관계에 대해 특별히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르면 성능위주 설계대상 건축물의 경우에

는 건축허가 신청전에 「소방시설공사법」에 따라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설치되는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에서 미리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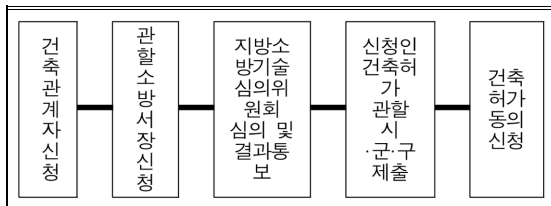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소방동의제도의 법적 성질은 독립된 행정처분이 아니라 행정내부적인 협의절차인데 반해 성능위주 설계지침에서와 같은 소방동의절차는 건축관계자가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통보받아야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되므로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자체가 하나의 독립된 허가절차로서 기능하게 되므로 기존의 소방동의절차와 성격이 달라지게 된다.

「소방시설공사법」상의 소방기술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통해 성능위주설계를 적용한 건축물의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절차를 취하는 경우 이는 실제로 허가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이에 대해서는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법에서의 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¹³⁾과 건축허가등의 동의절차 등을 검토해볼 때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법령이 아닌 행정규칙인 지침에서 이를 정하고 있는 것은 위법한 절차라고 할 수 있다.

성능위주설계 대상인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건축허가의 관할 행정청에 건축허가등을 신청하기 전에 소방본부장에게 건축허가등의 동의에 대하여 사전심의를 받도록 하는 ‘소방시설공사 성능위주 설계지침’은 법규범의 체계를 위반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소방시설공사 성능위주 설계지침’은 원칙적으로 법규성이 없는 행정규칙인데, 「건축법」과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된 절차를 배제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고시라는 하위규범이 상위규범인 법률의 효력을 배제시켜서 법치국가원칙을 붕괴시키고 있다.¹⁴⁾

현행 법령상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절차는 성능위주설계에 적용을 배제하지 않기 때문에 성능위주설계를 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성능위주설계된 소방대상물에 대한 건축허가등의 동의절차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Table 2. Process of the Agreement on the Building Permission Based on the Guideline



13) 소방시설공사법령상 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화재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소방시설의 구조와 원리 등에 있어서 공법이 특수한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소방시설의 설계 및 공사감리의 방법에 관한 사항, 소방시설공사 하자의 판단기준에 관한 사항,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설계·시공·감리의 하자여부에 관한 사항, 새로운 소방시설과 소방용기계·기구 등의 도입 여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소방기술과 관련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이다.

14) Ph.Kunig, Das Rechtsstaatsprinzip, S.259 ff

진행하더라도, 사양위주설계된 소방대상물의 건축허가 등의 동의절차와 동일하게 진행함으로써 소방대상물의 화재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사양위주설계된 소방대상물에 대한 건축허가의 동의는 관할 소방서장 또는 소방본부장이 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의 설계에 대한 특별한 전문지식이 없어도 국가화재안전기준에 따라서 소방시설이 설계되었는가에 관하여 검토하면 충분하다. 이러한 검토에 필요한 지식은 특별한 전문지식이 없어도 가능하다. 그러나 성능위주설계의 화재안전성에 관한 검토는 특별한 전문지식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성능위주설계된 소방대상물에 대한 건축허가의 동의절차에서 추가적으로 소방시설에 대한 설계에 관한 화재안전성을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기관이 필요하다. 소방방재청이 성능위주설계의 검토를 전담하는 기관을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전문기관의 지정요건과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안이 적합한 법정책으로 사려된다.

건축허가등의 동의에 필요한 소위 건축허가등의기간도 사양위주설계와 다르게 정하여야 한다. 현재 현행 법상 소방동의절차의 기간은 7~10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 기간은 국가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사양위주설계에 대한 건축허가의 동의에 필요한 기간으로는 충분할 수 있다. 그러나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고, 확실한 기준이 없는 성능위주설계에 대한 화재안전성을 검토하기에는 충분한 기간이 되지 못한다.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 현행 ‘소방시설공사 성능위주설계지침’이 성능위주설계에 대한 사전심의기간으로 2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법령에서 소방동의기간에 대한 내용을 개정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사려된다.

3.4 소방시설공사 성능위주 설계지침의 문제

「소방시설공사법」 제11조제4항은 성능위주설계의 방법을 소방방재청장이 고시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성능위주설계의 방법에 관한 고시를 소방방재청장이 제정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잠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시가 제정될 때까지 「소방시

설공사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 성능위주 설계지침’이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 지침은 행정규칙임에도 불구하고, 법령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도 규정하여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하고 있다.¹⁵⁾

‘소방시설공사 성능위주 설계지침’은 위에서 설명한 건축허가등의 동의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성능위주설계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의 내용에 반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소방시설공사 성능위주 설계지침’ 제2조는 “성능위주 설계는 국가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기 부적합한 부분에 한정하여 적용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성능위주설계의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고시가 제정될 때까지 「국가화재안전기준」의 적용이 적합하지 아니 한 소방대상물에만 한정적으로 성능위주설계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사항은 「소방시설공사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법률사항을 배제하기 위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효력을 배제할 수 있는 법률규정이 있어야 하고,¹⁶⁾ 소방방재청의 지침으로 법적용 대상을 조정하는 것은 법률을 위반하는 것으로 해당 고시는 효력이 없다.

4. 결 론

성능위주설계제도는 사양위주설계의 한계를 보완하면서, 보다 효과적이고 동시에 효율적으로 소방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서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 제도의 도입을 할 당시에 현실적인 부분과 함께 제도적인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오랜 경과기간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법이 시행중인 현재 까지도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이다.

성능위주설계가 사양위주설계를 보완하고 대체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것으로서, 사양위주설계에 비해 설계자에게 전문성에 기초하여 많은 부분 재량을 인정하는 제도라는 점을 강조한다면 성능위주설계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내용은 반드시 법령의 개정을 통하여 보완되어야 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능위주설계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현행 소방관련법령과 고시에서 적합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성능위주설계를 정하고 있는 규정 또한 법체계와 맞지 않는 등의 문제에 대해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성능위주설계제도의 바람직한 정착을

15) H. Hill, Normsetzung und andere Formen exekutivischer Selbstprogrammierung, in: Hoffmann-Riem/Schmidt-Aßmann-Voßkuhle (Hrsg.), Grundlagen des Verwaltungsrechts, S.959 ff.; Cl.Franzius, Funktionen des Verwaltungsrechts im Steuerungsparadigma der neuen Verwaltungswissenschaft, DV, Bd.39(2006), S.335 ff.; J.Saurer, Verwaltungsvorschriften und Gesetzesvorbehalt - Zur Entscheidung des Bundesverwaltungsgerichts vom 17. Juni 2004, DOV 2005, S.587 ff.

16) R. Wahl, Verwaltungsvorschriften: Die ungesicherte dritte Kategorie des Rechts, in: Festschrift für 50 Jahre Bundesverwaltungsgericht, 2003, S.571 ff.; J.Saurer, Die neueren Theorien zur Normkategorie der Verwaltungsvorschriften, VerwArch. 2006, S.249 ff.

위한 법제도적 정비를 통하여 사양위주설계에 따르는 것 보다 화재안전을 더 효율적으로 확보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성능위주설계에 관한 법적 근거의 정합성, 설계의 대상물, 설계의 자격, 설계의 절차 등 여러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1. 국회법제실, “입법이론과 법제실무”(2005).
2. 권순평, “국내 성능위주소방설계(performance based fire protection design, 이하 PBD) 적용 현황과 주요 과제”, 소방안전, 한국소방안전협회, 제26권, 제2호(2006. 여름).
3. 김원국, “성능위주 소방설계의 국내도입에 관한 고찰”, 한국화재소방학회: 학술대회논문집, 한국화재소방학회 2002년도 추계학술대회논문집(2002).
4. 김원국, “성능위주소방설계개념 및 적용 방안”, 한국화재소방학회: 학술대회논문집, 한국화재소방학회 2006년도 하계세미나 발표집(2006.7).
5. 김환진 외 4인, “성능위주의 설계를 위한 성능기준에 관한 연구”, 한국화재소방학회: 학술대회논문집, 한국화재소방학회 2004년도 하계학술논문발표회 논문집(2004).
6. 백민호, “초고층 건물의 성능위주 소방 설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화재소방학회: 학술대회논문집, 한국화재소방학회 2007년도 춘계학술논문발표회 논문집(2007).
7. 차중호, “성능위주 소방 설계의 국내법규와의 연관성 연구”, 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6.2).
8. 행정안전위원회, “「소방시설공사업법」 검토보고서”(2005.6).
9. Fr. Curtius, “Entwicklungstendenzen im Genehmigungsrecht”, S.65 ff.
10. Cl. Franzius, “Funktionen des Verwaltungsrechts im Steuerungsparadigma der neuen Verwaltungsrechtswissenschaft”, DV, Bd.39(2006), S.335 ff.
11. K.-F. Gärditz, “Regulierungsermessen und verwaltungsgerichtliche Kontrolle”, NVwZ 2009, S.1005 ff.
12. H. Hill, “Normsetzung und andere Formen exekutivischer Selbstprogrammierung, in: Hoffmann-Riem/Schmidt-Aßmann-Voßkuhle (Hrsg.), Grundlagen des Verwaltungsrechts”, S.959 ff.
13. Ph. König, “Das Rechtsstaatsprinzip”, S.259 ff.
14. R. Pitschas, “Neues Verwaltungsrecht im partnerschaftlichen Rechtsstaat?”, DÖV 2004, S.231 ff.
15. R. Poscher, “Verwaltungsakt und Verwaltungsrecht in der Vollstreckung - Zur Geschichte, Theorie und Dogmatik des Verwaltungsvollstreckungsrechts”, VerwArch, Bd.89(1995), S.119 ff.
16. H. Rossen-Stadtfeld, “Die verhandelnde Verwaltung - Bedingungen, Funktionen, Perspektiven”, VerwArch. 2006, S.23 ff.
17. J. Saurer, “Die neueren Theorien zur Normkategorie der Verwaltungsvorschriften”, VerwArch. 2006, S.249 ff.
18. J. Saurer, “Verwaltungsvorschriften und Gesetzesvorbehalt - Zur Entscheidung des Bundesverwaltungsgerichts vom 17. Juni 2004”, DÖV 2005, S.587 ff.
19. R. Wahl, “Verwaltungsvorschriften: Die ungesicherte dritte Kategorie des Rechts, in: Festschrift für 50 Jahre Bundesverwaltungsgericht”, 2003, S.571 ff.